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23.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의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법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3	200	500	1,0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39